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

보도참고자료

배 포	2021. 3. 25.(목)
담 당 과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
과 장	최미라 (☎043-719-3401)
사 무 관	송호선 (☎043-719-3412)

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

행사장, 박람회 등 장소에서 1개월 범위 내 영업 시 신고절차 간소화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**맞춤형화장품** 제도 활성화를 위해 **행사장, 박람회 등**에서 **한시적**으로 **영업**할 수 있는 **신고 절차**를 **마련**하는 **내용**의 「**화장품법 시행규칙**」 **개정안**을 3월 25일 **입법예고**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.

< 맞춤형화장품 제도 : 「화장품법」 개정('18.3.13. 공포, '20.3.14. 시행) >

☑ **맞춤형화장품 :**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·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

☑ **맞춤형화장품판매업 :** 식약처에 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

○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**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**가 **1개월**의 **범위**에서 **한시적**으로 **추가 임시매장**을 **운영**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, **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**하도록 하고 **처리기간**은 **7일로 단축**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.

※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 : 10일

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**개인별 피부타입**과 **취향**을 **반영한 맞춤형화장품**이 **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**, 앞으로도 **화장품 산업**에 **활력**을 더하고 동시에 **안전한 화장품**이 **공급**되도록 **규제**를 **합리적**으로 **개선**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